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 사회적 처우의 현황과 과제

후생노동성 사회·援護局(원호국) 총무과 사회복지전문관 諏訪 徹

1. 사회복지사제도 개정의 목적과 개요

사회복지사제도는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 법」 (1987 년) 에 근거해 1988 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어왔으나 제도제정이래 사회복지제도·서비스의 변화 등으로 2007년에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제도개정의 논의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의 문제점으로 ① 최근 사회복지제도·서비스의 변화, 향후의 경제사회의 변화에 의한 복지욕구의 변화로 사회복지사의 재정의가 필요한 점 ②양성과정의 실천력 양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③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지와 관계자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임용·활용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지역을 기반으로 종합적 혹은 포괄적인 원조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 조직의 경영, 실천 과학화와 근거의 명확화, 지역의 자원개발, 복지정책작성에의 관여 등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실천력의 기초가 실습될 수 있도록 양성과정 커리큘럼이 재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과목의 확충, 상담원조이론·연습과목의 확충, 상담원조실습·지도체제 기준의 정비, 실습·연습담당교원과 실습시설 지도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의 조치가 생각되었다. 개정법에 근거한 새로운 커리쿨럼은 2009 년 4 월에 개시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시험은 2010 년 1 월에 실시된다 임용확대에 관해서는 신체장애인복지사, 지적장애인복지사 등의 임용자격으로 위치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사의 등록자수는 2009년 4월 현재 118,317명이 되었다.

2. 실습교육의 현황

2009 년도부터 사회복지사 양성(자격취득) 루트는 사회복지사양성시설과 복지계대학 등의 2 가지가 되었다.

양성시설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법령에 의해 커리큘럼, 시간 수, 설비, 교원 등의 요건이 정해졌으며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2009 년 4 월 현재, 51 시설, 67 과정, 정원 10,370 명이다.

복지계 대학 등은 커리큘럼, 시설, 교원 등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심사하고 인가한다. 양성시설과는 달리 원칙으로 후생노동성의 기준은 가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실천력 양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2009 년도부터 연습 · 실습계 과목에 대해서는 양성시설과 동등 기준이 가해져 후생노동성 · 문부과학성이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2009 년 4 월 현재, 271 교, 352 과정, 정원 23,174 명이다.

2009 년 1월에 실시된 국가시험 합격률을 보면 복지계 대학졸업자 수험자 31425 명 중, 합격자는 8715 명, 합격률은 27.7% (신규 졸업자의 합격률은 39.9%, 기존 졸업자 16.8%), 합격률이 50%를 넘은 대학은 17.7%이다. 양성시설졸업자의 수험자는 11,170 명 중 합격자는 4,144 명, 합격률은 37.1% (신규 졸업자의 합격률은 56.5%, 기존 졸업자 19.8%), 합격률이 50%를 넘은 양성시설은 35%가 되었다.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어디까지나 기준의 하나이나, 수료자의 도달수준에 대해학교간의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복지사 임용 처우의 현황

(1) 임용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주요한 직역은 복지서비스 시설·사업소, 사회복지협의회, 행정상담소, 병원 등의의료기관 등이다. 사회복지사 등록자를 대상자로 한 조사 (사회복지진흥 시험센터, 2008 년 7월. 조사시점 등록자 95,584명 가운데 조사응답자는 26,624명. 회수율 61.9%)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77.6%는 복지·개호·의료 분야에 취직이며 그 내역은 고령자분야 51.3%, 장애인분야 18.8%, 병원 7.6%등 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직종은 상담원·지도원 52.2%, 시설장·관리자 10.8%, 사무직원 8.9%, 개호직원 8.3%등이며, 상담원·지도원 이외의 직종도 많았다.

복지사무소의 현업원 · 사찰지도원들 가운데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유자의 비율은 2-3%이다 (후생노동성「복지사무소현황조사」, 2004 년 10 월). 사회복지사시설 상담원 가운데 사회복지사의 비율은 10%정도이다(후생노동성「사회복지시설」등 조사, 2005 년 10 월).

(2) 처우에 대해

앞선 2008 년 사회복지진흥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한달 임금 평균은 249,389 円, 연간 상여금의 평균은 781,470 円이다. 여기에서 추계되는 연수입은 370-380 万円이 된다. 응답자의 현장에서의 근무연수는 3 년 미만인 자가 40.6%로 많으나 복지개호직장에서의 통산근무년수는 3 년 미만인 자가 13.2%로 5 년 이상 10 년 미만이 30.4%, 10 년 이상은 39.6%로 경험년수는 비교적 길다. 또한 56.2%가 복지개호분야에서 1-2 회 이직을 경험하고 있다. 통산경험년수와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경험에 따른 임금인상과 경력산정의 평가가 그다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여진다.

4. 향후 과제

양성교육에 대해서는 커리큘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일종의 제도개정이 막 일어났으며 향후는 그실시상황, 효과, 과제를 파악·검증하는 것이 과제이다. 또한 실천력을 담보한다는 과제에 대해서는 양성과제의 개혁만이 아니라 계속(보수)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개정시의 국회부대결의에 있어 전문사회복지사(가칭)의 시스템을 급속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 지적된 것을 받아, 현재 일본 사회복지사회 등의 소셜워크 관계단체, 양성시설 등 교육관계단체에 의해 전문사회복지사 방식에 대해 검토되고 있다.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복지인재전체의 확보난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21 년도의 개호보수, 전문복지서비스 보수가 추가로 개정되어 개호서비스 분야에서는 개호직원의 배치비율 등에 착안한 가산이, 장애복지서비스에서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직의 배치비율에 착안한 가산이 설정되었다. 또한 21 년도 보정예산에서도 처우개선교부금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시책의 효과는 사회복지사에게도 파급할 가능성을 가지나, 시책의 초점은 특히 부족감이 현저한 개호직원에게 맞춰져 있다.

향후 복지직역의 사회복지사 임용확대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배치기준과 가산 등의 제도적 배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지나 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상담원조 활동과 팀케어, 서비스 관리 등에서의 효과에 대해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며 실증적인 연구의 축척이 요망된다.

(번역: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임효연)